

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

제출년월일 : 1994. 9. 24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의안번호

255

1. 제안이유

'94년도 중 각종 사업계획 및 공유재산 매수신청 민원 등에 의하여 취득, 처분 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공유재산 취득 : 3건 3동 3,898.71㎡
- 공유재산 처분 : 1건 1필지 7㎡

3. 재산의 표시

구 분	소 재 지	면 적(㎡)	재산가액(천원)	비 고
취 득 (건물신축)	괴정동 404-2번지	1,712. ⁹³	998,712	괴 정 3 동 사
	구평동 159-1외 5필지	835. ⁷⁸	466,000	구 평 동 사
	신평동 651-9번지	1,350	1,347,992	수 영 장
처 분 (매 각)	괴정동 421-10번지	7	4,900	토 지

4. 본 문

- '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: 따로 붙임

괴정3동사 신축취득

1. 취득이유

현 괴정3동 청사가 날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에는 협소하고 주차공간 부족, 건물의 노후 등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구보건소 부지로 신축 이전코자 함.

2. 취득대상 재산내역

사 업 명	소 재 지	구 조	면 적(m ²)	재 산 가 액	시 기
괴정3동사 신축취득	괴 정 동 404-2	철근콘크리트 - 스 라 브	1,712.93 (518평)	998,712 천원	94년도 4/4분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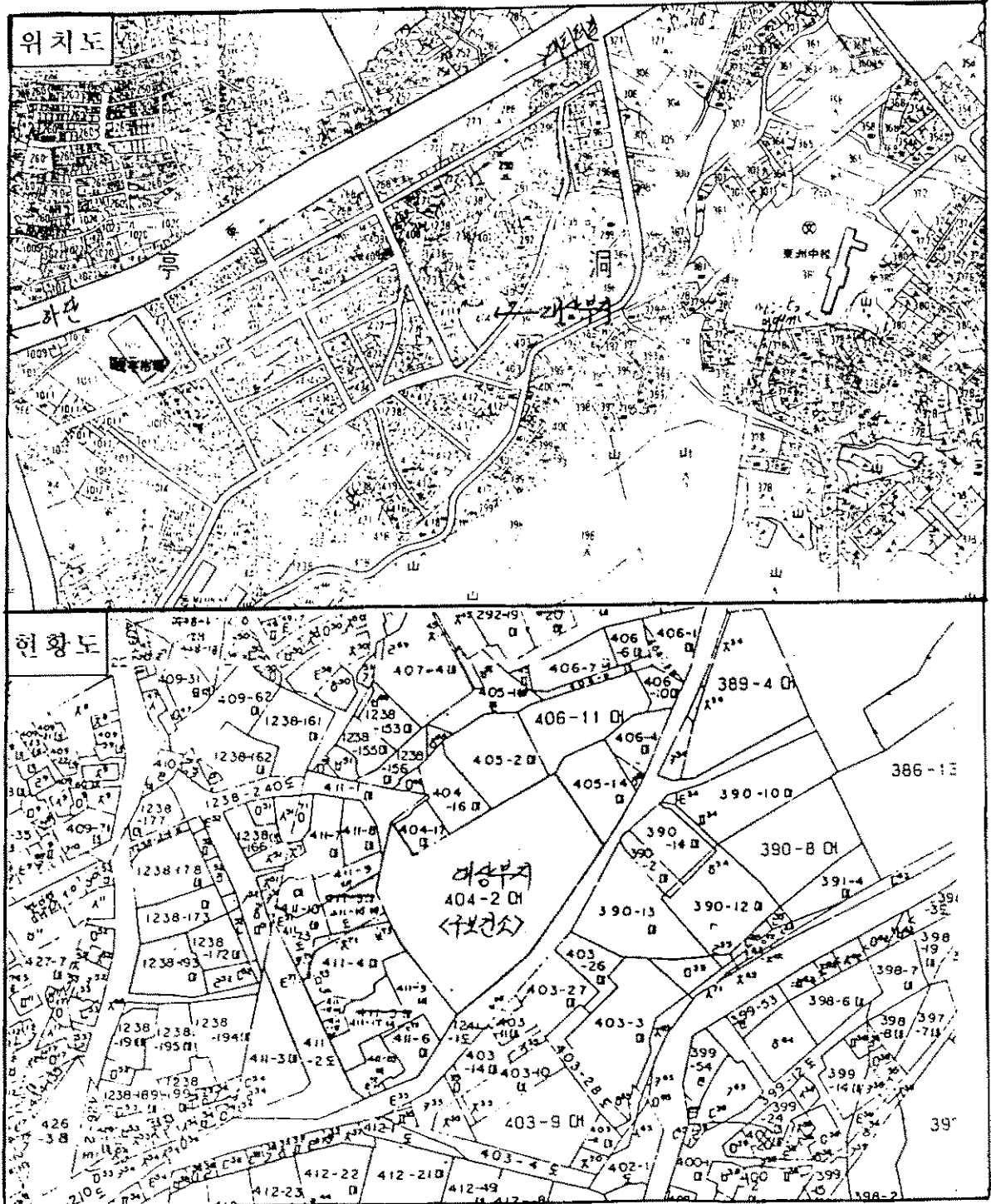
3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1994. 10~1995. 6
- 사업규모 : 지하 1층, 지상 3층 1,712.93m²(518평)
※여성의 집(3층-130평), 간이진료소(2층-10평)
- 사 업 비 : 10억1천(건축비 9억9천, 설계용역, 시설부대비 2천)

4. 위 치 도 : 따로 붙임

위치 및 현황도

(괴경동 404-2번지 건물 1,712.93㎡)



구평동사 신축취득

1. 신축이유

구 구평동사 부지가 감천항 임항도로 개설부분에 편입되었음에 따라 2000년대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적정규모의 동사를 건립코자 함.

2. 취득대상 재산내역

사 업 명	소 재 지	구 조	면 적(m ²)	재 산 가 액	시 기
구평동사건물 신 축 취 득	구 평 동 159-1외 5필지	철근콘크리트 - 스 라 브	835.78m ² (253평)	466,000 천원	94년도 4/4분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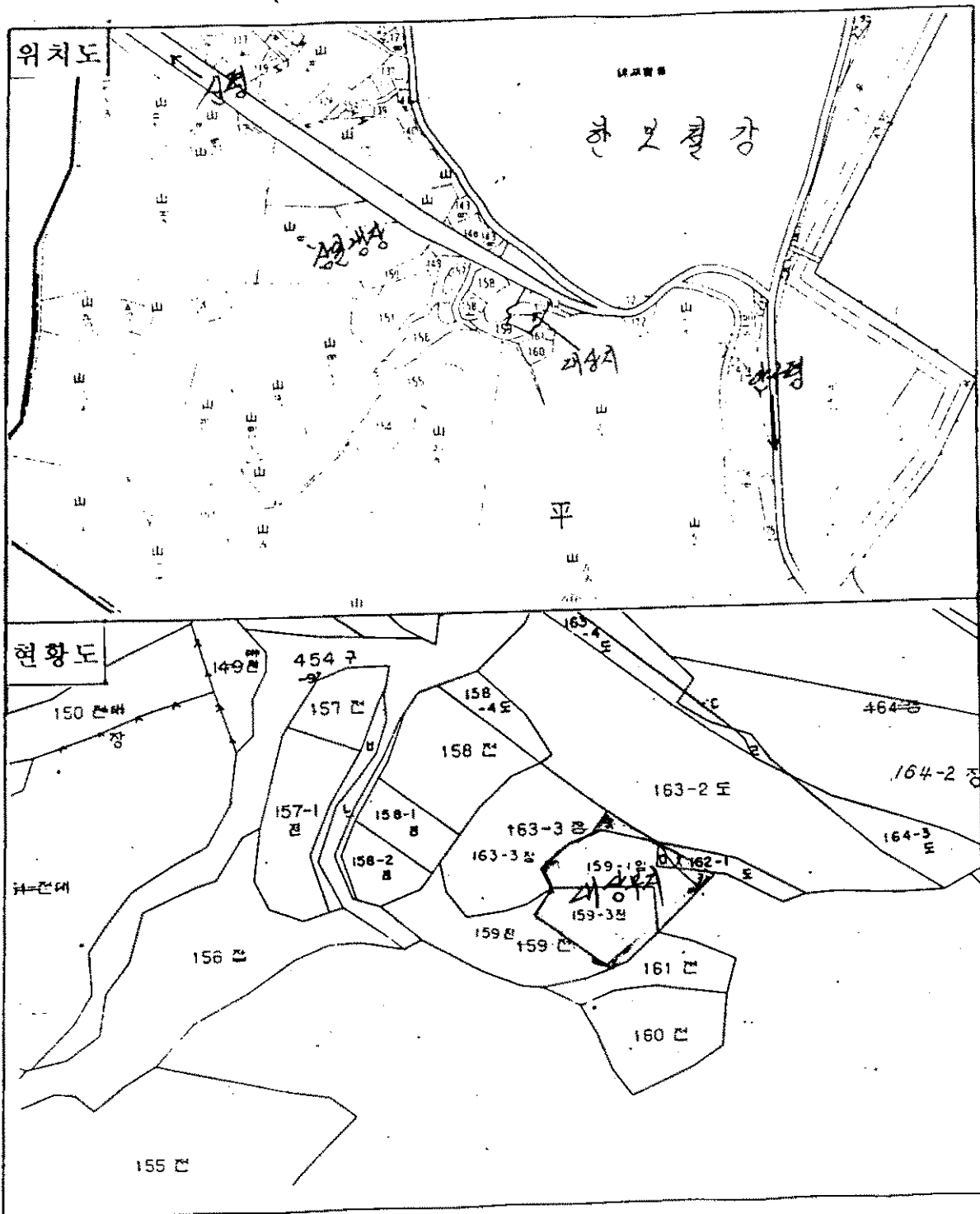
3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1994. 10~1995. 6
- 사업규모 : 지하 1층, 지상 3층 835.78m²(253평)
- 사 업 비 : 4억7천(건축비 : 4억6천, 설계용역, 시설부대비 : 1천)

4. 위 치 도 : 따로 붙임

위 치 및 현 황 도

(구명동 159-1외 5필 건물 835.78㎡)



실내수영장 신축취득

1. 취득이유

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건전한 생활체육으로 전환함으로써 구민의 정서함양 및 체력향상을 도모코자 신평레포츠 공원내 실내수영장을 건립코자 함.

2. 취득대상 재산내역

사 업 명	소 재 지	구 조	면 적(m ²)	재 산 가 액	시 기
실내수영장 신축취득	신 평 동 651-9	철근콘크리트 - 라 멘 조	1,350m ² (408평)	1,347,992 천원	94년도 4/4분기

3. 사업개요

- 사업시기 : 1994. 11~1995. 7
- 사업규모 : 지상 2층 1,350m²(408평)
- 사 업 비 : 13억7천(건축비 : 13억4천, 설계용역, 시설부대비 : 3천)

4. 위치도 및 현황도 : 따로 붙임

소규모 잡종재산 매각

1. 처분이유

점유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 왔으나, 민원인의 매수 신청에 의거 본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.

2. 처분대상 재산내역

소 재 지	지 목	면적(m ²)	재산가액 (천원)	신 청 인	
				주 소	성 명
괴정동 421-10	대	7	4,900	괴정 3동 428 (23/3)	이 영 화

3. 재산의 현황

- 괴정3동 소재 “서부경찰서 방법순찰대”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M 지점에 위치하며
- 동 재산은 신청인 소유건물 담장안에 위치하는 소규모 토지로서 규모,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할 가치가 없고 건축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임.

4. 관련법규
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제7호
 - 건축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
수의매각 가능

5. 위치도 및 현황도 : 따로붙임

위 치 및 현 황 도

(面積 421 - 10년 전 대 7㎡)



1994년도취득재산목록(7-2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번호	재 산 표 시			취득금액	취득시기	취득사유	취득재산소유자 주소·성명	비 고
	지 목	소 재 지	수 량					
1	건 물	괴정동 404-2	1,712.93	998,712	94. 4/4	신 축	사 하 구 청 장	
2	건 물	구평동 159-1외 5필지	835.78	466,000	94. 4/4	신 축	사 하 구 청 장	
3	건 물	신평동 651-9	1,350	1,347,992	94. 4/4	신 축	사 하 구 청 장	
			이		상			

(주) (1)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.

(2) 매입은 실제 취득된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하고 재산소재지,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·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

(3)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.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번호	재 산 표 시			매 각 대 상 수 량	과 표 또 는 평 가 액	매 각 시 기	매 각 사 유	매수회망자 주소·성명	비 고
	지 목	소 재 지	일단의수량						
1	대	괴정동 421-10	7	7	4,900	94. 4/4	건축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	괴정3동 428(23/3)	이 영 회
				이		상			
계	토 지								
	건 물								
	기 타								